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0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남희·김영호·한창민

박희승 · 송재봉 · 박상혁

임미애 · 최민희 · 김우영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	③
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	
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1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u>제14조</u> 에 따른	<u>제14</u> 조 및 제14조의2-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